

법정책이슈브리핑

Law & Policy Issue Briefing

제2025-4호

발행일 : 2026. 1. 22. (목)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책임구조와 감독체계 개편 과제



이준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I. 들어가며

지난 15일 국회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디지털 기술과 전통 금융제도의 결합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5년간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2021년 이후 국내외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거래량이 폭증하고, NFT · DeFi ·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복잡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가상자산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202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자금세탁방지(AML)를 주된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유지,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보다 포괄적인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대형 거래소의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규제 미비를 넘어, 감독체계의 구조적 결함과 책임구조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법정책이슈브리핑 제2025-4호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현행 감독체계 및 책임구조의 문제점을 진단 · 분석하고,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 및 감독체계를 비교 · 분석,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여,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감독기구 일원화, 책임 명문화, 인가제 도입 등 구체적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과 제도 현황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개념과 관련 제도 현황, 한계점 등을 알아본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과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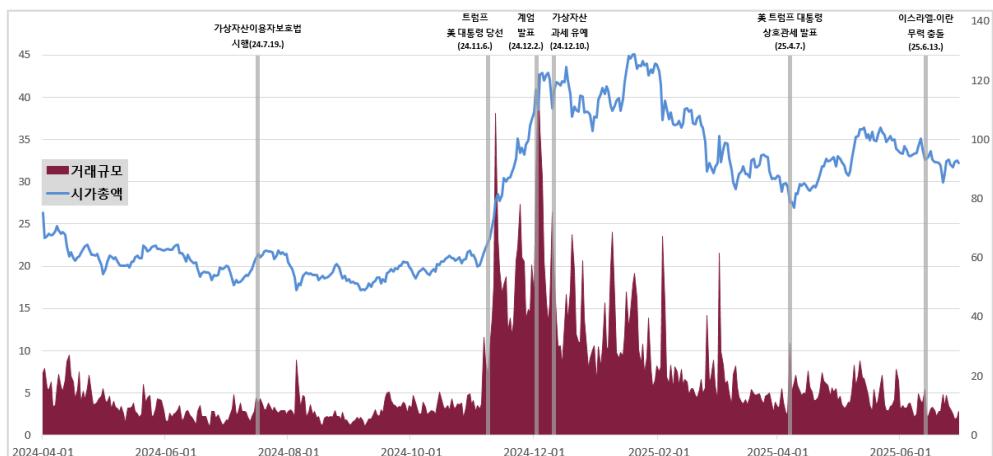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이하 'VASP')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의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발행 등의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¹ FATF는 2019년 권고안을 통해 VASP를 금융기관과 유사한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며,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특금법 개정을 통해 VASP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①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업자, ② 가상자산의 보관 · 관리 서비스 제공자, ③ 가상자산 매매 · 교환 중개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² 특금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VASP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확보하고(제2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제1호). 그러나 이는 신고제에 불과하며, 사업자의 자격 요건이나 내부통제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가. 시장 규모와 동향 등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시가총액(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제출자료 기준)은 95.1조 원('25년 6월말)으로 '24년말(110.5조 원) 대비 14% 감소하였다.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거래규모는 1,160조 원('25년 상반기)으로 '24년 하반기(1,345조 원) 대비 14% 감소하였다.

[’24.4월 – ’25.6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 및 시가총액 추이



¹ FATF (2021), Update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FATF, Paris, <https://www.fatf-gafi.org/en/publications/Fatfrecommendations/Guidance-rba-virtual-assets-2021.html>, p. 24 (최종 검색: 2026. 1. 20).

²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및 각목 참조.

글로벌 관세 갈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시장 상승세가 둔화되고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해외 기관의 투자가 확대되며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한 반면, 개인 투자심리가 약화되어 여타 가상자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 EU 등에서 가상자산 제도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국내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24년 7월 시행)이 안착된 가운데,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나. 시장 구조 및 문제점

2025년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상위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거래소는 대부분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의 경우 전체 시장 점유율이 70%를 상회하며,³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집중 구조는 ①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상장 기준의 불투명성, 거래소 간 정보 비대칭), ② 소비자 피해 발생(상장폐지 시 투자자 손실, 해킹 사고 시 보상 체계 미비), 책임 소재 불명확(운영사와 계열사 간 법적 책임 구분이 모호함)과 같은 우려를 야기한다. 또한, 거래소의 수익 구조는 대부분 수수료 기반이며, 상장 수수료나 꼼수 마케팅 등 비공식적 수익원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⁴

3. 기존 법령 및 제도 간 연계성과 규제 강화

가. 일반

현행 VASP 제도는 특금법에 기반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과의 연계는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부과하지만, VASP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금법을 중심으로 하는 VASP 규제는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VASP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가상자산을 매개로 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VASP의 의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VASP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먼저 예치금 관리가 강화되어, VASP는 이용자 예치금 전액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가상자산 보관과 관련해서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

³ 서울신문, “업비트 70% 독주”… 중소 거래소는 사실상 ‘개점휴업’, 2025년 10월 3일자 기사 참조.

⁴ 매일경제, “‘수수료 무료’ 라더니 제일 높잖아”…투자자 분노케한 거래소들, 2024년 10월 26일자 기사 참조; 더게임스데일리, [키웨스트의 코인 스토리] 암호화폐 거래소의 어두운 그늘, 2021년 7월 6일자 기사 참조.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이용자 위탁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 ·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하며(법 제7조 제2항),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은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여 콜드월렛 제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이상, 기타 사업자는 최소 5억 원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법 제8조, 감독규정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이 금지되며(법 제10조 제1항), VASP는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할 수 없다(법 제10조 제5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 또한 거래소는 가격이나 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을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법 제12조). 마지막으로 VASP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정당한 사유로 차단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 및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가 있다(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4.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일정 정도의 제도적 안전장치는 마련하였으나, VASP의 책임구조 및 감독체계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주요 한계로 감독기구의 분산, 책임구조의 불명확성, 신고제의 한계 등과 같은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감독체계의 일원화, 인가제 혹은 등록제 도입, 책임 명문화 등을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EU의 MiCA 규제 등이 국내 제도 설계에 있어 유의미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III. 현행 감독 및 책임체계의 한계

1. 감독체계의 구조적 문제

현행 VASP 감독체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IU는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신고 · 검사 기능을 담당하며, 2022년 국내 5대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 및 법령 제정 권한을 가지나 실질적인 검사 · 제재 권한은 제한적이며, 금융감독원은 전통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만 VASP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기관 간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VASP에 대한 직접적 검사 권한을 누가 갖는지 불명확하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측면의 검사만 수행할 뿐, 투자자 보호나 경영진 책임에 대한 감독 권한은 없다. 또한 금융 사고 발생 시 어느 기관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이는 감독 사각지대를 낳는 동시에, 기관 간 책임 회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동일 사안에 대해 기관별 중복 요구가 진행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는 감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2. 책임구조의 불명확성

VASP의 법적 책임구조는 경영진, 운영사, 계열사 간 구분이 모호하다. 특히 거래소 운영사가 복수의 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더욱 불분명해진다. 사고 발생 시 대표 이사 또는 주요 임원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법인 간 책임 전가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경영진의 책임 회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기존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예탁결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로, 전통 금융 법 제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는 거래소 파산, 해킹 피해 등에 있어 책임 소재가 사법적·제도적 규율만으로는 불충분한 측면을 초래한다. 또한 내부통제 기준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해상충 방지나 리스크 관리가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내부통제 미비).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3. 제도 간 충돌 및 공백

가상자산은 금융, IT,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나, 관련 법령 간 연계가 부족하여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VASP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VASP는 결제 기능을 제공하나,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법적 책임이 모호하다. 이러한 제도 간 충돌은 규제 일관성을 저해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4. 신고제의 한계

현재 VASP는 FIU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기술적 보안 능력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없으므로, 자격 미달 사업자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해킹, 자산 유용, 상장 비리 등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 발생 시 감독기관의 사후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IV. 해외 입법 및 감독체계 동향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라 각국은 VASP를 포함한 가상자산 중개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은 기능 중심의 규제 접근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인 FATF와 IOSCO 등은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감독체계와 책임구조를 간략히 검토하고, 국내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1. 미국

미국은 증권형과 상품형 가상자산을 구분하여 SEC와 CFTC가 각각 감독하는 기능별 규제 접근을 취하고 있다. SEC는 증권형 토큰에 대해 등록의무, 공시의무, 투자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며, 증권법에 따라 집행권을 행사한다. CFT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상품형 토큰에 대해 파생상품 시장 및 일부 현물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최근에는 Crypto Sprint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25년에는 CLARITY Act가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하는 등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며,⁵ SEC와 CFTC의 관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디파이(DeFi),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기술이 아닌 기능 중심의 규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감독기관 간 협업을 통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2. EU

EU는 2023년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발효하여, CASP(Crypto Asset Service Provider)에 대한 인가제 및 통합 규제체계를 도입하였다(제5편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 인가 및 운영 조건 및 제7편 회원국 주무당국들, 유럽은행감독청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 내용 참조). CASP는 회원국 감독기관의 인가(authorisation)를 받아야 하며, 인가 후에는 EU 전역에서 영업이 가능한 패스포팅 권한을 부여받는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최소 자본금 기준을 설정하였다(예: 커스터디 서비스는 €125,000 이상). 이해상충 방지, 고객 자산 분리 보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된다. MiCA는 기존 금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을 규율 대상으로 삼아,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EU는 인가제와 공시의무를 통해 사업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제도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자금결제법에서 암호자산교환업을 등록제로 규정하고, 그 요건과 등록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5). ‘암호자산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에서는 최소 자본금을 1천만 엔 이상으로 정하는 등 VASP의 자격 요건과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제9조 제1항). 한편, 자금결제법은 암호자산교환업자에 가상자산의 분별관리의무와 이행보증 암호자산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각각에 대한 분별관리감사의무도 부여하고 있다(제63조의11 내지 제63조의11의 2). 이와 같은 엄격한 규제로 일본은 FTX 파산 사태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⁶

⁵ 헤럴드경제, 美 가상자산 3법 ‘크립토 위크’서 통과...리플 신고가 경신, 2025년 7월 18일자 기사 참조.

⁶ 더 자세한 내용은 류경은, 가상자산거래소 이해상충 규제 방안에 대한 소고, 은행법연구, 제17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24, 91~119쪽 참조.

V.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국내 VASP 제도는 자금세탁방지(AML)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유지, 사업자 책임 명확화 등 포괄적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분석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1. 감독체계의 일원화 및 권한 명확화

현행 감독체계는 FIU,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복수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감독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문 감독기구를 설립하거나, 금융감독원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일원화된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통합 감독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FIU의 신고 · 분석 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검사 · 제재 기능을 통합하여 실질적 감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상장심사, 내부통제, 자산보호 등 감독기준을 법령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별도의 가상자산 감독기구 설치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금융감독 체계를 개정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2. 책임구조의 명문화

VASP의 경영진, 운영사, 계열사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현행 구조는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을 초래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문화하고, 고의 · 과실에 따른 책임 구분 기준 마련해야 한다(경영진 책임 명시). 상장심사, 자산관리, 고객응대 등 각 업무 단계별로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단계별 의무 구분). 계열사 간 업무 분담 시 공동책임 원칙을 적용하여 책임 회피를 방지한다(공동책임 구조 도입).

3. 인가제 또는 등록제 전환

현행 신고제는 사업자의 자격 검증 없이 영업을 허용하는 구조로,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원화마켓 운영 사업자에 대해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여, 자본요건 · 내부통제 · 기술보안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⁷ 소규모 사업자 대해서는 신고제를 유지하되, 최소한의 요건(예: 보험 가입, 자산 분리 보관 등)을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업자의 규모, 서비스 유형, 고객 수 등을 고려한 차등 규제 적용도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만, 인가제도 도입 시 시장의 위축, 중소 사업자 퇴출, 기술 혁신의 저해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해 보인다.

⁷ 이미 신고제 하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는 경과 규정을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원대성, 가상자산 업권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제안 -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를 중심으로 -, 법과 정책 연구, 제24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24, 177~178쪽.

4. 투명성 및 공시제도 강화

거래소의 상장·상폐 기준, 수수료 구조, 이해상충 여부 등은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심사 기준 공개,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 자산보호 절차 법제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거래소별 상장 기준을 사전 공시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일부 공개 등이 필요하다. 거래소와 발행인 간의 금전적 관계, 내부자 거래 가능성 등을 사전 신고 및 공시하도록 한다.

VI. 나가며

가상자산 시장은 기술 혁신과 금융의 융합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기존 금융규제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규율체계가 요구된다. 대한민국은 2021년 특금법 개정을 통해 VASP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에 한정되어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유지, 사업자 책임 명확화 등 보다 포괄적인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이슈페이퍼는 국내 VASP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국·EU 등 주요국의 감독체계와 책임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동일 기능에는 동일 규제’라는 원칙에 따라 기술이 아닌 기능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형태나 기술적 구현 방식에 관계없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건전성 확보라는 규제 목적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FIU,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간의 역할 중첩을 해소하고, 통합된 감독기구 또는 전담 부서를 통해 실질적인 검사·제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책임 추궁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경영진, 운영사, 계열사 간의 책임구조를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인가제 혹은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EU의 MiCA 인가제 및 일본 자금결제 법의 등록제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넷째, 상장심사 기준, 자산보호 절차, 이해상충 방지 등 거래소 운영의 핵심 요소에 대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시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피해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 ● ○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법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나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법정책이슈브리핑을 수시 발간합니다. 법정책이슈브리핑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지평법정책연구소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태 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s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준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서울 종로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우)04527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E-mail. master@jipyong.com www.jipyong.com

법정책이슈브리핑 구독신청